

## WTO와 한국의 금융시장개방

최병철  
경제학과

### <요약>

WTO협정이 발효되면 GATS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의무 및 규칙인 최혜국 대우 및 공개주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외국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국별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며, 내부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 각종규제는 규정화하여 규제의 명료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시장개방은 가속화될 것이다. 금융시장개방은 국내금리의 안정, 유리한 자금활용 기회의 확대, 금융산업의 발전 등의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의한 국내경제에의 악영향으로 국가간의 금리차, 물가상승률 및 환율변동에 대한 예상에 근거한 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은 일국의 환율 및 통화관리정책의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경영으로 대형화전략과 업종별, 고객별 전문화전략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신운용방식의 개혁, 선진금융기법 및 신금융상품의 도입과 개발을 통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거액의 해외자본이 유입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화량, 환율정책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유입된 외화가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려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증권투자 등의 자본유출정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 WTO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Choi, ByongCheol  
Dept. of Economics

### <Abstracts>

When the WTO is established, each Member shall be obliged the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and the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Article II and III of the GATS Part II.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treat any other Member less favourable than any other country. And each Member shall publish promptly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guidelines which affect trade in services. So, financial liberalization will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There are so many positive effects from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such as, stability of domestic interest rates, effective allocation of capital and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etc. But it is so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macroeconomic and exchange rates policies by capital inflow. Now financial institutions will pursue strategic managements such as globalization or specialization for the competitiveness. Also, authorities attempt to help achieve important economic goals through monetary and exchange rates policy mix.

---

## I. 서 론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는 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 있는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협정 중에서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칠 협정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교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각 서비스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로 규정한 보완적 규범인 8개의 분야별 부속서이다. 금융부문의 경우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같은 금융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과 함께 개별 회원국들은 쌍무간의 양허협상을 통하여 현존 규제조치 및 자유화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WTO 체제하에서 금융서비스의 교역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및 국별 양허표에 의해 규율되어진다.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환경변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금리규제의 완화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 금융당국간에 금융규제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와 금융거래의 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 증권화로 요약되는 금융산업의 변화는 EC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금융자유

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1993년 6월에는 국내금융시장의 체제정비와 외환시장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블자로 하는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80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국내 금융산업의 자율화, 개방화 시책은 90년대에 들어 그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그 폭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93년 11월의 2단계 금리자유화 시책과 12월 15일의 UR타결을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최근 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와 금융전업군 육성 논의, 그리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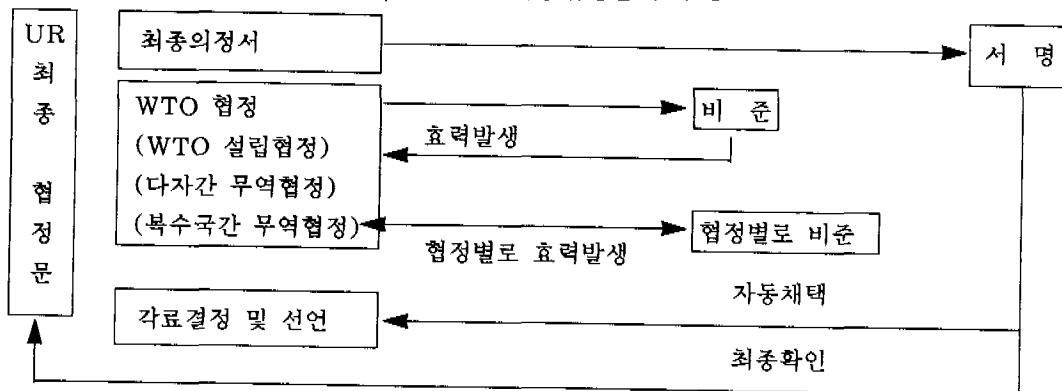
본고의 제II장과 제III장에서는 앞으로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갈 WTO의 체제와 이것의 근간이 되는 WTO설립협정에 대하여 고찰한 후, 제IV장에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GATS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개방현황을 제V장에서 다루고, UR금융서비스협상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제VI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는 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남아 주요국들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면서, 제VIII장에서 WTO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과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WTO 체제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Marrakesh)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의를 끝으로 지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푸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출범하여 7년반 동안 끌어온 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전세계 125개국(GATT가입국 123개국 포함)의 대표들이 참가한 UR 각료회의는 현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신설하기로 합의 하였다. WTO는 종래의 GAT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사법권의 부재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전원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인해 통상문제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WTO체제는 GATT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보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UR협상결과를 총정리하고 있는 UR 최종협정문(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의 내용은 최종의정서(Final Act), WTO의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그 부속서로 첨부된 각종 다자간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 각료결정 및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그리고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로 구성되어 있다.

&lt;그림 1&gt; UR 최종협정문의 구성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와 신교역질서」, p.13에서 인용

UR 최종의정서는 UR협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과 함께 UR협상결과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고, 향후 절차 등을 포괄하고 있다. WTO협정은 세계경제 질서를 규율할 다자간 협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과 함께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WTO 설립협정)과 그동안의 협상결과인 부속서로서 24개의 다자간 무역협정 및 4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어서 23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은 WTO협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UR협상동안의 주요 결정을 포괄하고 있다. WTO협정은 서명후 국내비준 또는 비준 후 서명의 절차로 WTO협정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의정서에서 WTO협정은 전체적으로 수락하도록 되어 있으며,<sup>1)</sup> GATT 1947의 체약국이 아닌 참가국의 경우는 WTO협정을 수락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GATT 1947에 가입하여야 한다.

### III. WTO 설립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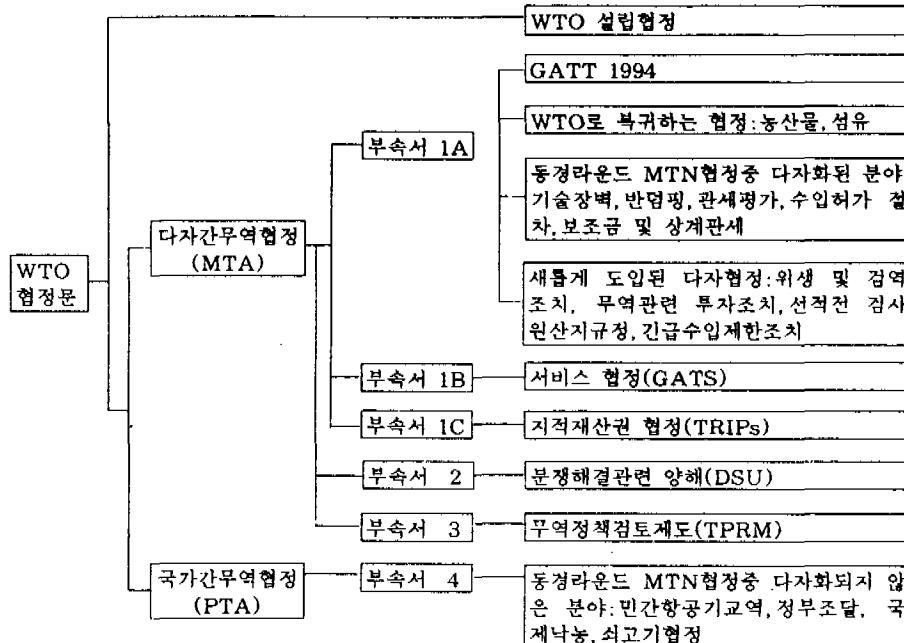
WTO협정은 회원국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본문인 WTO설립협정과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다자간 무역협정(MTA)과 복수국간 무역협정(PTA)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들은 WTO협정의 일부로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PTA)들은 WTO협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 협정들을 수락한 회원국에 제한 적용된다. 따라서 PTA들은 실질적으로 WTO협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편의상 이들 협정을 WTO가 관리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

WTO 설립협정은 전문과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을 함께 실현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존

1) "The representatives agree that the WTO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ptance as a whole, ---."(Final Act paragraph 4)

노력과 보호수단을 혼용하면서 상호호혜의 바탕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sup>2)</sup> WTO를 설립한다고 하였다.  
 3) 그리고 WTO의 지위에 대하여 WTO는 법인적 성격을 가지며, 기능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각 회원국에 의해 법적능력(legal capacity)을 보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sup> 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WTO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 WTO 협정문의 구성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와 신교역질서」, p.16에서 인용

WTO의 조직은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구로 최소 2년에 한번 개최토록 하고 있는 각료회의를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료회의는 WTO협정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휴회중인 때에 필요에 따라 열리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각료회의의 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로 개최되어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거나, 또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Trade Policy Review Body)로 개최되어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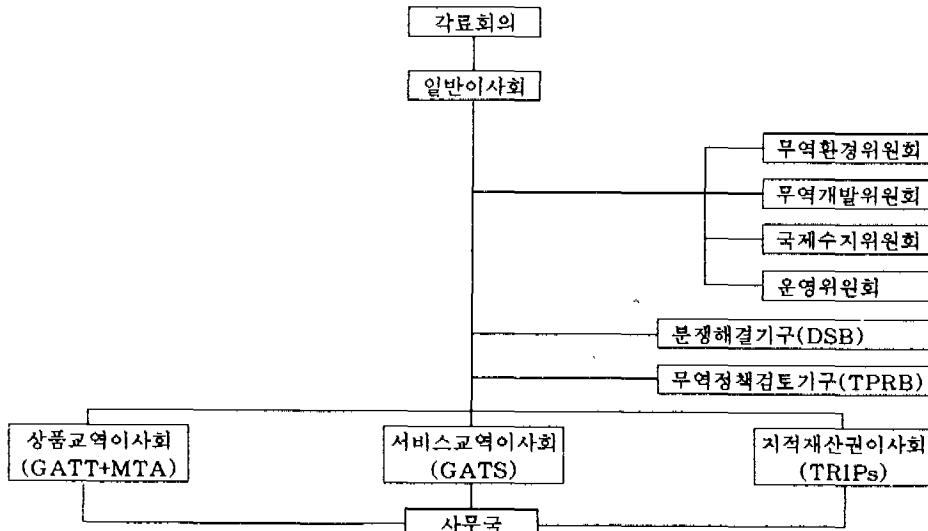
2) WTO 설립협정 전문

3) WTO 설립협정 제1조(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4) 제8조(Status of the WTO)1항 "The WTO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and shall be accorded by each of its Members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치되어 있다. 한편 각료회의 요구와 일반이사회의 필요에 적절히 응하기 위하여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및 운영(예산, 재정,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정할 무역환경위원회를 향후의 제1차 WTO 일반이사회에서 설치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림 3> WTO의 조직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1994),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p.39에서 인용

WTO의 의사결정 체제는 과거의 GATT가 시행해온 바와 같이 만장일치의 합의체(consensus)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투표에 따르도록 하여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로 개최된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되어 있으며, WTO협정문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회원국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과반수표결이 아닌 3/4 다수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정들의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법, 규제 및 행정절차들이 이를 협정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sup>5)</sup> 따라서 WTO 규정에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나 WTO협정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교역장벽 등은 모두 위법으로 금지되고 있다.<sup>6)</sup>

이제 WT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인 까닭에 UR협상의 배경이나 포괄범위, 협상 결과 등 UR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그대로 WTO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에따라 WTO는 UR협정의 주요내용을 모두 관할하게 되며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제16조 4항, "Each Member shall ensure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its obligations as provided in the annexed Agreement".

6) 따라서 WTO가 설립되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한 일방주의와 자국 국내정책의 일방적 강요 등이 약화되고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되어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같은 강력한 일방적 조치는 억제될 것이다.

- (1)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협정의 채택
- (3) GATT 규범의 명료화, 강화 및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 (4)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 (5) 지적재산권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lt;표 1&gt;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GATT 체제	WTO 체제
시장개방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하에 주력</li> <li>· 비관세장벽은 동경라운드에서 철폐노력 그러나 선언적인 규정 정립수준으로 실효성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 도입으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li> <li>·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 (모든 회색조치를 4년내 폐지)</li> </ul>
관할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주로 공산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율도입 (다자간섬유협정(MFA)도 WTO로 흡수)</li> </ul>
신분야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li> <li>·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li> <li>·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도입</li> </ul>
규범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li> <li>·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으로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 강화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으로 구분)</li> <li>·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로 남용방지</li> <li>· 세이프가드협정,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협정 등을 새롭게 도입</li> </ul>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와 신교역질서」, p.24에서 인용

한편 WTO는 과거의 GATT와는 달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WTO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분쟁해결절차 및 능력을 대폭 확충, 강화하였다. 그리고 WTO에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실시하기로 하였다.<sup>7)</sup> 무역정책검토제도는 각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및 정책을 다른 회원국에게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 전반에 대한 명료성과 일관성 증진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교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WTO는 그동안 GATT체제하에서 저해되어 온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GATT 및 UR에서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된 모든 국제무역규범을 관掌하는 매우 강력한 다자간국제무역기구이다. 특히 기존의 GATT와 크게 다른 것은, 첫째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춘사법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 둘째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식의 국제기구로

7) 무역정책검토기구는 모든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교역순위 5위에서 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국들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TPRM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최초로 GATT에 대한 무역정책검토를 받았으며 오는 1996년 다시 TPRM을 하게 되어 있다.

서 다수의 실무적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국제무역에 대한 모든 규범을 관리한다는 것, 셋째 의사결정방식이 GATT의 전원합의제가 아닌 다수결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IV. 금융서비스 관련부문

WTO협정 중에서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칠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이다. GATS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교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협정이다.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각 서비스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서비스분야별로 별도로 규정한 보완적 규범인 8개의 분야별 부속서(Sectoral Annex)가 첨부되어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Annex on Financial Services)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같은 금융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과 함께 개별회원국들은 쌍부간의 양허협상을 통하여 현존 규제조치 및 자유화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WTO 체제하에서 금융서비스의 교역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및 국별 양허표(National Schedule)에 의해 규율되어진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중에서 금융서비스 교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제1부의 서비스교역의 범위와 정의, 제2부의 일반원칙 및 규범 그리고 제3부의 구체적 약속 등이다. GATS 제1부에서는 서비스공급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공급(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2)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 대한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공급(소비자의 이동), (3)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상업적인 주재를 통하여 공급(상업적 주재), (4)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다른 회원국으로의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공급(자연인의 이동).<sup>8)</sup>

한편 GATS 제2부에서는 일반적 의무 및 규칙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sup>9)</sup>과 공개주의원칙(Transparency)<sup>10)</sup>을 규정하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국가간의 무차별원칙으로써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1)</sup> 그리고 공개주의에 의하면 각 회원국들은 서비스 일반협정 운용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 또는 국제협정들을 그들의 발효이전에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개방하기로 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들의 새로운 도입이나 수정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서비스이사회에 통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에 이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추진방식과 직결되는 구체적 약속사항(Specific Commitments)으로 시장접근(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추가약속(Additional Commitments)에 관한 내용을 제3부에서 규정하고

8) 제1부 제1조(Scope and Definition) 2항.

9) 제2부(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s) 제2조

10) 제2부 제3조

11) 그러나 제2조 2항이 최혜국대우의 면제사항으로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있다. 시장접근 조항은 각 회원국이 타 회원국들의 국내시장접근에 있어서 양허계획서에 명시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취해질 수 없는 조치들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sup>12)</sup> 한편 내국민대우 조항으로는 양허계획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타 회원국들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국민대우를 위해 국내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에게 취해지는 조치와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 동일성 여부를 떠나 국내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에게 경쟁에 유리하도록 작용할 경우 내국민대우 위배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적용하며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금융감독 규제의 허용, 분생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정의에 있어서 일반협정에 정의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되 정부기능 수행과정에서 공급되는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는 일반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 통화 및 외환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의 활동.
- (2) 사회보장제도와 공공기관의 연금제도 등의 법적 제도적인 활동.
- (3) 정부보증 또는 정부금융자산을 이용한 행위와 공공기관의 회계활동.

그리고 국별 양허표는 회원국간의 양자간 또는 복수협상을 통하여 합의한 구체적 자유화추진계획서이다. 양허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 그리고 추가적 자유화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및 적절한 경우에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등으로 되어 있다. 양허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화수준을 후퇴시킬 수 없으며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 V.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현황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이면서 재원조달의 확대 및 효율적 투자지원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금융부문의 성장과 발전은 저축과 투자의 증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실물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과 실물간의 보완적 발전관계는 금융연관비율(총금융자산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 개인부문 금융자산축적율(혹자경제주체인 개인부문이 보유하는 총금융자산의 개인가처분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 그리고 금융부문의 발달 속도를 나타내는 개인부문 실질금융자산 증가율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은 1970년의 2.21에서 1991년의 4.22로 지난 20여년 동안 거의 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부문의 실질금융자산은 1970년 이후 1991년까지 연평균 13.7%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개인부문 금융자산축적률을 역시 1970년의 0.48에서 1991년 1.1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2 참조>. 그러나 선진국들의 금융연관비율은 1991년 현재 미국 5.22, 일본 6.89 및 대만 5.27에 이르고 있으며, 개인부문 금융자산 축적

12) 제16조 2항의 서비스공급자 수, 서비스총거래액 및 총자산, 총영업회수 및 총산출량, 서비스공급자가 고용하는 총자연인의 수, 상업적 주제의 특정형태, 외국인의 주식취득이나 개인의 총주식취득액 등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등의 각종 제한조치들.

률에 있어서도 미국 2.57, 일본 2.14, 대만 2.31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2> 금융경제지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금융연관비율	2.12	2.17	2.39	3.28	4.18	4.22
개인부문 금융자산축적률	0.48	0.55	0.58	0.81	1.14	1.16
개인부문 실질금융자산 증가율	8.72	3.18	6.72	22.52	13.18	16.21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자금순환, 1992.

이러한 금융의 양적 성장은 대출시장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상대적 축소, 보험 및 연금부문의 확대, 그리고 유가증권, 예금, 대출금 비율의 상대적 안정성 등의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20여년간에 금융기관의 시장구조에서 발생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은행의 상대적 축소와 비은행금융기관의 상대적 확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러한 낙후성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한미금융정책협의(Financial Policy Talks)<sup>13)</sup>를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개방압력을 가해 옴에 따라 1993년 6월에는 국내금융시장의 체계정비와 외환시장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 Print)」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80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국내 금융산업의 자율화, 개방화 시책은 90년대에 들어 그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그 폭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UR 협정 발효와 1996년을 전후로 한 OECD 가입추진일정 등으로 당초의 개방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와 금융전업군 육성 논의, 그리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1993년 8월12일 왜곡된 금융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금융설명제를 단행하였으며, 11월1일에는 그동안 경제여건 미성숙 등으로 보류되었던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행하였다.

## 1. 외환거래 자유화

정부는 1993년 6월29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단기금융시장 발전,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를 포함한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 계획(Blue Print)」을 발표하였다. 199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발표된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자유화, 채권시장의 조기개방, 상업차관도입,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외환포지션 확대, 원화의 국제화 등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원화의 국제화,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상업차관 도입허용 등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외환자유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변동폭을 확대하여 가

13) 한미금융정책협의는 1988년 9월에 양국간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국의 재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0년2월 제1차회의가 개최된 이래 93년 9월10일 까지 4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비공식회의가 있었다.

격기능을 보장하고, 외환거래 실수요원칙의 완화 등을 통해 선물환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외환의 수요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표3 참조>. 특히 환율제도에 있어서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0년 3월에 과거 10년 동안의 복수통화巴斯켓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일일변동폭이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1.5%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매입과 해외예금을 허용할 계획이며 해외 여행경비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책을 과감히 제시하고 있다.

&lt;표 3&gt; 외환자유화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92년까지의 추진상황	환율제도	복수통화巴斯ket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90.3)
	외환포지션관리	종합매각초과포지션 한도 폐지, 현물환매각초과포지션 한도 정비.(92.9)
	실수요증명	사후제출가능거래 금액한도 확대, 전당 1백만달러 이하의 선물환거래시 폐지.(92.9)
	원화의 국제화	자본의 원화표시 거래 허용.(92.9)
제1단계 (1993)	환율제도	은행간 환율 일일변동폭 확대(시장평균환율의 +-0.8%)에서 1.0%)(93.10)
	외환포지션관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포지션한도 차등적용 폐지(93.4), 종합매각초과포지션 한도 확대(93.7)
	실수요증명	모든 선물환거래시 사후제출제로 전환(93.4)
	원화의 국제화	전당 10만달러 이하 수출입거래 원화결재 허용(93.10)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도입(93.10)
제2단계 (1994-1995)	환율제도	환율변동폭 추가 확대(1.0%에서 1.5%)(94.11)
	외환포지션관리	관리기준의 매입외환기준과 자기자본기준의 병용(93.10)
	실수요증명	현물환매각초과포지션 한도 확대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시 면제, 원화대가 외화예금 한도 폐지, 원화 및 외화간 선물환거래시 면제범위 확대
	원화의 국제화,	원화결제범위 추가 확대
제3단계 (1996-1997)	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정착
	외환포지션관리	자기자본 위주로 전환
	실수요증명	일상적거래에 실수요증명 면제
	원화의 국제화	원화결제 대상을 무역외거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2.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시장의 여건과 국내외 금융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 IMF 8조국 가입과 더불어 UR 금융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라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었다. 증권시장 개방은 국내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1991년에 이르러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가 허용되고, 1992년부터 일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는 국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 외환, 주식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대내외 증권투자의 개방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금리

차 및 통화관리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되어있다<표4 참조>. 그리고 1996년까지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자본자유화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6년까지 OECD에 가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OECD 회원국의 자본이동자유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992년 2월 말 현재 24개 OECD 회원국의 평균자본자유화율은 82.9%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OECD가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확대개방이 필요하다.

<표 4> 자본자유화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제1단계 (1993)	직접투자 주식시장개방	외국인투자개방 예시제 시행. 해외직접투자 절차간소화 및 제한 완화. 50%이상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한도 폐지(93.8)
제2단계 (1994-1995)	직접투자 주식시장개방 채권시장개방	예시제로 개방업종 확대.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94). 중소기업발행 CB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94). 금리수준이 국제 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허용(94). 채권형펀드 운용(95). 국제기구의 원화채권 발행 허용(95).
제3단계 (1996-1997)	직접투자 주식시장개방 채권시장개방	외국인투자 신고제 정착. 해외직접투자 신고제 전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 확대.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97).

###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업무규제 완화

한편 외국금융기관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확대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자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진출이 확대되어 왔고, 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호혜적 진출협상에 따라 국내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후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적인 업무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됨에 따라 그 업무활동의 폭이 증대되어 갔다.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진출도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점차 국내증권회사에 대한 자본참여와 지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lt;표 5&gt;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 및 업무규제 완화 부문

제1단계 (1993)	진입규제	외국투신사 및 외국 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 허용(93.1) (전체 10%, 회사당 5%)
	중소기업 업무 대출제도 진입규제	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치 허용(93.1) 관련규정의 명료화(93.3)
제2단계 (1994-1995)	중소기업 업무 대출제도 신탁의 통화채 인수	외국신용평가회사의 사무소설치 및 지분참여 허용(94).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설치요건 완화(94).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지분참여 범위 확대(95). 제도개선 여건 조성.
		인수비율의 단계적 인하.
제3단계 (1996-1997)	진입규제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최저한도 인하(96).
	중소기업 업무 대출제도 신탁의 통화채 인수	의무대출비율의 단계적 인하.  인수제도 폐지.

자료 : 재무부,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1993.6.29.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차산운용의 다양화와 보험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수요증가에 의해 보험회사의 신설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외국에 대한 시장개방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험업의 국내시장개방이 거의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은행,증권회사 등의 여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제3단계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기존의 진출기관들에 대해서도 업무규제에 대한 완화 내지 철폐가 이루어져 국내시장에서의 외국금융기관과 국내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lt;표 6&gt;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현황(1994년 2월말 현재)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지점	72	10	2	3
사무소	23	28		13
자본참여		4		2
합작회사			7	
현지법인			3	
대리점				4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편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운 업종은 외국은행, 금융리스업, 개발금융회

사,상해보험업,손해보험업 의 5개 업종이며, 중앙은행,연금 및 공체업,금융시장관리업,어음 청산업의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19.2%(1993년)로 제조업부문의 98.1%,서비스업 부문 전체에 대한 자유화율 76%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아 금융산업의 외국에 대한 개방정도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7 참조>.

<표 7>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추이

	1985	1990	1993
제조업	92.5	97.7	98.1
서비스업	60.8	61.8	76.0
금융 및 보험	-	-	19.2

자료 : 재무부,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1993.7.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개방<sup>14)</sup>은 OECD 제국 및 경쟁국인 대만,싱가포르는 물론 후발개발도상국인 동남아 제국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8 참조>.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개방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금융시장 개방은 UR 금융협상,신경제 5개년계획,제3단계 금융시장개방조치 등으로 개방폭의 확대 및 가속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90년대 말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외환 및 자본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한국 금융산업의 개방화 정도 종합평가(1992년 말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금융기관 업무완화	해외부문 이익	28.5	78.7
	해외부문 자산	50.3	78.4
금융기관 상호진출	외국은행 국내진출	29.5	12.3
	국내은행 해외진출	21.6	63.7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시장 규모	5.8	114.1
	OECD규약 준수율	5.9	102.3
자본시장 자유화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	67.2	81.9
	대내외 증권투자 규모	44.9	155.6
	OECD규약 준수율	0	115.4
원화 국제화	경상거래에서의 이용	0	32.9
	자본거래에서의 이용	0	32.6

자료 : 신한종합연구소,「한국경제의 국제화 정도에 관한 연구」,1993.8.

주 : 미국을 기준으로 개방화 정도를 상대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임.

14) 한 예로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비교해 보면 태국 49%,인도네시아 49%,중국 49%,필리핀 40%,말레이지아 30%,대만 10%,싱가폴 10%(전략적 산업),한국 10%로 제한하고 있다.

## VI. 금융서비스 양허내용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일본, EC 등 주요국들과 서비스 양허협상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1993년 12월 15일에는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최종양허표를 GATT에 제출하였다.<sup>15)</sup> 그러나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혜국대우의 차등적용을 시도함으로써 일본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반발에 직면하여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4개월이내의 후속협상을 약속한 수준에서 종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print)」 등 우리의 시장개방계획에 의거하고, 91년 이후의 여러 쌍무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금융서비스를 양허하였다.<sup>16)</sup> 양허계획서에 의하면 시장개방에 대한 제한은 negative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하는 사항만을 기재하고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적인 자유화약속의 내용은 positive방식을택하고 있어 아무런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가 금융서비스 최종 양허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우선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친 제한사항으로는,

- (1) 업종별로 독립된 사업체로 설립되어야 하며 타업종을 겸영할 수 없게 됨.
- (2) 외국금융기관의 국경간공급, 국내소비자의 해외금융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의 공급시 원화로 지급되는 거래는 금지됨.
- (3)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며, 자산운용이 제한됨.
- (4) 지점자산의 국내보유의무가 있으며, 본점자본금을 지점 영업활동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정책자금대출과 2년미만의 수신금리(적립식은 3년미만)가 규제됨.
- (6) 신상품도입이 규제됨.(단,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신상품도입이 허용됨) 등이며, 양허 표상의 모든 제한조치에 대해서 1993년 12월 31일자로 현재의 제한사항을 동결(standstill) 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사항보다 강화된 규제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sup>17)</sup>

### 1. 은행업

은행업관련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과 소비자 이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허약속이 없고 상업적주재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표9 참조> 은행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외국은행의 사무소와 지점만 설립허가되고, 지점의 경우 사무소 설치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사무소를 제외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금지되고 외환포지션이 규제를 받는다. 한편 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이 8%로 제한되어 있다. 예금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제한으로는 CD발행이 최고자기자본의 250% 또는 200억원까지 허용되며, 기간은 91-270일로 최소발행단위는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목적의 예금

15) 한국은 주요 협상대상국들과의 협상을 거쳐 총 11개 분야 155개 서비스업종 중에서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의 3개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8개분야 78개 서비스업종을 양허하기로 하였다.

16) 우리나라는 금융부속서상의 16개 업종 중에서 화폐중개, 금융정보제공 처리 가공 및 기타금융서비스분야의 2개 업종을 제외하고, 은행, 증권 및 보험분야의 14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17)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2부속서에서는 WTO 설립협정 발효일 후 4개월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그 부속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자국양허표에 기재된 자유화약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 경우 취급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그외 신용카드업에 있어서 외국신용카드전업사의 사무소, 지점 설립이 허용되며 카드론 등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한도가 규제되고 있다.

<표 9> 은행업관련 양허내용

제한사항	자유화조치
사무소와 지점만 설립허용	외국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신설시 경제적 필요성 심사(ENT) 삭제
금융채 발행금지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현물환 매각초과포지션 한도 확대(94~95년)
외환포지션 규제	CD발행의 한도 및 만기확대, 여신의 창구지도 폐지(94~95년)
외환매매 실수요원칙 유지	신탁업 영업요건 명시
중소기업 의무대출제 유지	신탁자산 운용시 통안채 인수의무
CD발행한도, 만기 및 최소발행단위 제한	통화채 의무인수비율 인하(94~95년)
신탁업 영업요건 명시	
신탁자산 운용시 통안채 인수의무	

## 2. 증권업

증권업관련 양허는 상업적주재에 관한 것으로,<표10 참조> 외국증권회사는 사무소, 지점, 합작법인만 설립이 허가되며, 지점의 경우 사무소 설치후 2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합작법인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주주의 지분은 40%이상 50%미만이며 내국인 주주자격에 관한 기준이 있다. 합작법인의 외국인 주주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 지분은 20%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무 중 1개 업무수행시 100억원이상, 2개 업무수행시 150억원이상, 3개 업무수행시 20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이 필요하며, 외국 증권사의 복수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외국증권사당 10%미만, 총 50%미만만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법인이 기존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는 제한되나, 국내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기업주식에 한하여 매종목당 외국인 개인별 3% 및 총외국인 10%내에서 허용되고 있다.<sup>18)</sup> 외국투자신탁회사는 사무소만 설립이 허가되고 기존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외국투자신탁회사 당 5%이내, 총 10%이내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

18) 1994년 12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총외국인 10%에서 12%로 확대할 계획이며, 1995년 중에는 통화량, 환율, 국내 중시동향 등을 고려하여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lt;표 10&gt; 증권업관련 양허내용

제한사항	자유화조치
<증권업>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의 확대(94-95년)
사무소,지점,합작법인만 설립허가 합작법인은 주식회사로 설립한정 기존 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제한 상업적주재 설립시 ENT 적용 지점설립시 영업기금 요구	국내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 투자시 내국민대우(94년) 증권저축,신용공여 업무 허용
<증권투자신탁업 및 투자자문업>	
사무소만 설립 허용 사무소이외의 상업적주재 설립시 ENT 적용 국내 기존 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 제한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립시 ENT 폐지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 범위 확대

### 3. 보험업

생명보험업에 있어서 합작사의 경우는 외국인 주주는 동일인으로서 그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내국인 주주자격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다. 그리고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상의 제한이 있다. 한편 외국 손해보험회사는 사무소,지점만 설립이 허가된다. 그러나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소비자 이동 및 상업적 주재에 대해 일체의 양허약속이 없다.

&lt;표 11&gt; 보험업관련 양허내용

제한사항	자유화조치
<생명보험업>	
합작법인설립시 외국인 주주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 상업적주재 설립시 ENT 적용 연간 영업점포 설립수 제한 보험전문인력 채용상의 제한	
<손해보험업>	사무소,지점 설립 허용
국내 기존손보사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 상업적주재 설립시 ENT 적용 보증보험은 전업회사에 의한 복점체제 유지 연간 영업점포 설립수 제한 항공기보험을 제외한 해외보험요율 사용제한	해상수출저하보험의 경우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허용
<재보험 및 재재보험업>	
재보험출재시 한국내에서 설립된 재보험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출재해야 함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제한	
<보험대리점업>	손해보험의 경우 2개 보험회사를 위한 대리점(복수 대리점)영업이 허용
원칙적으로 전속대리점만 허용 상업적주재 설립시 ENT 적용	

우리나라가 최종양허표에 제시한 자유화 약속사항은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6개의 자유화조치)들이기 때문에 WTO협정 타결로 인해 당장 금융시장 개방폭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1-2년간 우리의 개방계획을 후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국내경제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자유화일정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또한 WTO관련 금융협상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쌍무협상의 결과도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모든 진출국의 금융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한미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미국과의 쌍무협상 결과 합의한 개방조치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종전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sup>19)</sup>

## VII.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시장 개방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국은 198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실물경제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선진국의 금융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다. 한편 1980년대 말 이후 정치적 안정과 양질의 저임노동력 및 풍부한 원자재 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1970년대 초반 대부분의 예금금리를 자유화한 후 1978년에 대출금리를 포함한 모든 금리를 전면 자유화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의 경기침체기에 금리규제를 재개 했다가 1991년 2월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였다. 그리고 금리자유화로 인한 중앙은행의 통화조절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제도 개선, 공개시장조작 확대 등을 통하여 간접조달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활성화 하였다. 또한 1973년에 파운드화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외환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외환에 대한 자유화가 완료되었으며, 1986년에는 국내증권회사에 대하여 외국인의 출자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1978년부터 본격화된 말레이지아의 금융자유화는 전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금융자유화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은행의 금융증개규모 확대와 증개효율의 개선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하였다.

태국은 금융발전 3개년계획(1990-1992)을 수립하여 단기간내에 전면적인 금리자유화를 단행하고, 금융기관의 업무규제 완화, 상업은행의 점포망 증설 등 금융효율증진을 위한 제반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 IMF 8조국으로 이행한 이후 외환자유화를 꾸준히 확대하였으며, 1992년 9월에는 금융국제화를 촉진하고 대외금융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콕을 지역금융센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20)</sup> 또한 1986년부터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987년에 비거주자를 위한 주식시장을 개설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착실히 진전시켰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 금융감독기준의 국제표준화에 부응하여 BIS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199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sup>21)</sup> 따라서 태국은 그 동안의 금융개혁추진으로 투자재원의 원활한

19) 미국은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Fai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ct)인 Riegle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0) 태국은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금융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콕을 국제종합금융센터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국제화 3단계계획을 수립하여 제1단계로 방콕 역외 금융시장(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BIBF)을 1993년 3월에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동원을 통해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83년 1차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금리를 전면 자유화하고 은행별 대출한도제 폐지,정책금융 지원대상 축소 등 은행여신에 대한 직접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1984~85년중에는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은행신설 및 지점설치규제의 완화,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금융개혁을 1988년에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1983년 이후의 대폭적인 금융개혁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투자 확대 및 경제체질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융개방에 앞서 금리자유화, 대출한도제 폐지 등 시장기능 활성화 조치 및 금융기관의 신중설을 통한 경쟁촉진책을 신시하여 먼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남아 3국은 1980~90년대초에 이르는 금융개혁으로 금융중개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국내저축 동원을 국대화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루할 수 있었다. 한편 동남아 3국은 금융개혁의 진전과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예금자 보호문제가 대두되자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수용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및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등 금융감독기준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 VIII. 영향 및 대응책

WTO협정이 발효되면 GATS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의무 및 규칙인 최혜국 대우 및 공개주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국별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며, 내부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 각종규제는 규정화하여 규제의 명료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시장개방은 가속화될 것이다. 금융시장개방은 국내금리의 안정, 유리한 자금활용 기회의 확대, 금융산업의 발전 등의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경제의 대외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누릴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자금배분의 효율성의 증가이다. 국내저축을 보충하여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외자도입원의 다원화에 의한 재원조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자본의 확충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을 주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증권시장의 육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질좋은 서비스가 공급됨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국민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의한 국내경제에의 악영향으로 국가간의 금리차, 물가상승률 및 환율변동에 대한 예상에 근거한 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은 일국의 환율 및 통화 관리정책의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sup>22)</sup> 또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가열로 인하여 국

21) BIS 기준은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규제감독위원회가 1988년 7월에 제정한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Standards)」로 규제자본금의 측정과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다.

22) 1970년대 남미3국(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은 금융시장개방과정에서 자본유입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불가인상, 금리인상, 환율의 상대적 고평가현상의 지속 등을 야기하게 되고 마침내 80년대초 이를 남미 3국은 금융시장개방정책을 철회한 경험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경기 팽창기에 금융 및 자본자유화를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부동산투기붐이 이는 등 거품경제 현상이 심각하게 부각된 바 있다.

내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이 약화되고, 인력화보 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교란이 우려되며 자본유입의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은행간의 부분별한 경쟁의 증가로 부신태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자본유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따른 정책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표 12>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금융산업에 대한 효과

긍정적 효과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시켜 자금배분의 효율성 향상 증권수요의 증대에 의한 시장확대와 중시 활성화 합리적 투자결정과 선진투자기법의 도입 및 신상품의 개발로 증시의 질적 발전 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혁신 유도 외국금융시장 진출에 의한 업무영역확대 해외투자기회의 확대로 해외시장분석력 및 금리 환율의 예측력 제고
	투기성 Hot Money의 유출입에 의한 금융자산가격의 변동폭 확대 해외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에 의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은행간 경쟁 격화에 의한 은행위기 초래 가능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에 의한 시장잠식
	선물환거래 및 해외채권발행 등 기업중심의 금융거래의 증가로 국내금융기관의 국제 금융업무 위축 가능

### (1) 은행업

은행영업 활동에 있어서 내국민대우가 강화될 것이며, 각종 행정규제의 공개성과 명료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미국계 은행에 대한 특혜적 요소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의거 일본, EC계 은행에도 허용될 것이다. 한편 CD은행한도의 확대는 아직 CD발행의 여유가 있고 외국은행의 CD시장에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3)</sup> 그러나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외국은행들이 CD발행금리를 인상하여 CD발행이 확대되면 수신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은행들에 의한 신상품 도입이 허용되면 국내은행의 수신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고소득층을 겨냥한 외국은행의 수신점유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MMC 및 자산담보부채권 등 새로운 수신상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은행은 열세에 놓일 것이다.

통화채 의무인수비율의 하향조정으로 금전신탁시장에서의 외국은행지점에 의한 시장점유율을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기업금전신탁의 경우 현행 통화채 인수의무비율은 운용자산의 70%이상으로 매우 높아 향후 인수의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기업금전신탁에서의 외국은행지점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새로운 영업환경에 맞추어 과거의 수신고 목표에서 탈피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1) 기존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자체경영합리화의 추구, (2) 외국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업무제휴 등을 통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해외진출, (3) 상품개발능력을 제고시켜 고수익상품을 개발, (4) 국제금융과 국제영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5)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sup>24)</sup>의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위험관리능력의

23) 1993년 12월 현재 전체 외국은행지점의 CD발행한도는 2조7천억원으로 국내은행 CD발행한도 약 16조2천억원의 약 14%에 달하고 있다.

24)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금리변동이 크게 증대하고 자산·부채간 기간불일치가

배양 등의 경영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2) 증권업

증권업에 있어서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확대로 주식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나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급격히 상승될 수 있어 통화증발 및 환율변동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식투자시 내국민대우를 받고 투자신탁사, 투자자문사에 의한 외국인 지분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증시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1)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실현, (2) 국내금융기관과의 온라인전산망에 의한 자금이체의 활성화, (3) 전문펀드 운용자의 양성, (4) 해외지점의 적극적인 육성 등이 요구된다.

### (3) 보험업

보험업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되어 있어 추가적인 양허가 없었다. 따라서 현재 외국보험사와 국내보험사간의 경쟁현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접근의 확대, 영업상 내국민대우 개선 및 최혜국대우가 이행될 것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복수대리점이 허용되고 미국, 유럽 이외의 국가에게도 시장접근이 허용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의 촉진은 보험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내보험사에 의한 상품개발의 촉진, 요율산정 및 위험관리능력의 제고, 그리고 보험상품의 다양화로 인한 보험서비스의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경쟁의 격화는 국내보험사의 수익기반을 위축시키고, 보험사의 경영부실화에 따른 고객보호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대리점업이 개방될 경우 개인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시장보다는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면서 상품 및 요율차별화가 용이한 손해보험시장이 더 크게 잠식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보험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1) 모집인 방식을 지양하고 대리점판매, 통신판매, 신용카드사와의 제휴판매 등을 확대, (2)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금융부대서비스의 확대, (3) 특정수요자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상품, 사회보장 보완형상품 및 투자형상품 등의 신상품개발에 노력, (4)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서비스협상으로 금융환경은 보다 급속히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위험, 환율위험, 유가증권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위험을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지하면서 자산부채의 규모와 가격을 적절히 조정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ALM체계를 활용하여 자산운용과 위험관리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경영으로 대형화전략과 업종별·고객별 전문화전략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신운

나타남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연계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ALM은 자산·부채의 동시조절을 통해 제반 금융리스크의 과학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하였다.

25) 외환제도 개혁 소위원회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약 780억 달러 규모(종합수지 기준)의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 1992년 현재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경우 4.8%, 손해보험사의 경우 0.5%의 시장점유율에 불과하다.

용방식의 개혁, 선진금융기법 및 신금융상품의 도입과 개발을 통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거액의 해외자본이 유입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화량, 환율정책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유입된 외화가 생산적인 부분으로 홀려 들려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증권 투자 등의 자본유출정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호상, 김병연,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1994.1.
- 경기은행, "UR 이후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경은조사, 1994.1.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총론)」, 1993.12.
- 김효명, "자본자유화의 추진과 환율 및 금융정책 운용방향", 조사월보 제282호, 국민은행, 1994.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1994.7.
-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1994.
- 대한손해보험협회,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손보업계의 대응방안", 손해보험, 1993.9.
- 보험감독원,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생보경영전략", 보험조사월보, 1993.6.
- 보험감독원, "금융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대응방향", 보험조사월보, 1994.1.
- 신용관리기금, "UR금융서비스 협상의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신용관리, 1994.3.
- 신한종합연구소, 「Universal Banking 제도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1992.10.
- 조정구,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
- 좌승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1992 여름.
- 재무부, 「UR금융협상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1993.12.
- 재무부, 「신경제5개년계획-금융개혁부문-」, 1993.5.22.
- 재무부,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 Print)」, 1993.6.30.
- 최창호, "금융관련 WTO협정의 주요내용과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조사월보 제280호, 국민은행, 1994.4.
- 한국금융연구원, 「UR 금융협상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전략」, 1993.12.
- 한국산업은행, "금융시장개방 가속화와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산업경제 제9호, 1994.5.
- 한국산업은행, "금융시장개방 확대와 자본유입효과", 산업경제 제10호, 1994.5.
- 한국산업은행, "금리자유화 확대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응전략", 산업경제 제11호, 1994.6.
- 한국산업은행, "UR금융협상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산업경제, 1994.1.
- 한국은행, "금융시장 개방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조사통계월보, 1993.10.
- 한국은행, "동남아 주요국의 자본자유화와 통화정책운용", 조사연구자료 93-21, 1993.
- 한국은행, "70년대 남미 3국의 금융자유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93-17, 1993.1.
- 한국은행,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93-1, 1993.1.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 1993.12.
- Broaddus,A., "Financial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background, Current Status,

- and Prospects", Economic Review FRB of Richmond ,Jan/Feb 1985, pp.2-21.
- Germany,J.D. and J.E.Morton, "Financial Innovation and Deregulation in Foreign Industrial Countries," Federal Reserve Bulletin, October 1985, pp.743-753.
- Mathieson,D.J. and L.Rojas-Suarez, "Liberalization of the Capital Account: Experiences and Issues", Occasional Pap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March 1993.
- Pavel,C. and J.N.McElravey, "Globaliza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Economic Perspectives,FRB of Chicago, May/June 1990, pp.3-18.